

2019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

2019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, 해당 학생은 각각의 기간 내에 1단계 및 2단계 모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「학업이수에 관한 규정」 내용

제12조(출석인정)

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(독립학부장)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

1~6 : (생략)

7 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: 해당 기간

8~10 : (생략)

부칙(2018. 2.28.)

제1조(직제규정 개정)에 따른 직권 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2.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

가. 대상자 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 중 조기취업자

※ 입학 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

나. 취업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

인정 범위	필수증빙서류
4대 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	1.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 가입 확인서 - 공무원 : 건강보험 가입 필수 - 그 외 : 4대 보험 가입 필수 (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→발급) 2. 재직(계약)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※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첨부
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	연수사실확인서(연수기간 명기)

※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 출석인정 불가 : 예)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(창업), 프리랜서, 단순 아르바이트, 체험형 인턴, 보호자나 친인척이 대표자인 경우 등

3.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

가. 신청기간 : 매학기 개강 이후 ~ 기말고사 이전

구분	URP 신청경로	신청기간	비 고
1단계	수업관리/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	2019. 3. 4.(월) ~ 3.15.(금) ※ 3.16.(토)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입력 가능	출석인정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, 2019. 3. 4.(월)부터 입력 가능하며, 필수증빙서류 첨부
2단계	수업관리/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	2019. 5.29.(수) ~ 6.12.(수)	학기 말 재직자는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첨부(기간 전 발급서류는 불인정) ※ 중도 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

나. 단계별 승인 절차 : 총 2단계로 진행

1) 1단계 :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

① 학생→담당교수	② 학생	③ 취업및현장 실습지원팀	④ 수업학적팀	⑤ 학생	⑥ 학생→담당교수
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	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	서류 검토	승인	'공인출석 신청 확인서' 출력	'공인출석 신청 확인서' 및 증빙서류 제출

2) 2단계 : 학기말(기험시험 전) 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

① 학생	② 취업및현장 실습지원팀	③ 수업학적팀	④ 학생	⑤ 학생→담당교수
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- 재직자 : 재직증명서 - 중도 퇴직자 : 경력증명서	서류 검토	승인	'공인출석 승인 확인서' 출력	'공인출석 승인 확인서' 및 증빙서류 제출

※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며, 미제출 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

※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
(학점취소, 졸업취소 등)은 본인에게 있음.

4. 유의사항

가.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.

나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(1단계) 및 학기말 재직서류 재제출(2단계)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.

다. 출석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.

라.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(053-810-1093)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, 퇴직일 이후는 공인출석 인정이 되지 않음.(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됨.)

마.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, 온라인 출석하여야 함.

바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(마지막 학기) 적용을 원칙으로 함.

2019. 2.

교무처장